

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통지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감시대상	집합투자업자명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
	집합투자기구명	하나UBS파워단기증권투자신탁[채권]
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·행위의 법령 등 위반내용		-위반일 : 2015년 7월 30일 -약관위반 어음 신용등급 A3+이상 -대우조선해양 : A3 -종목코드: KRZF04266K34
신탁업자 조치사항	철회요구사항	
	변경요구사항	
	시정요구사항	규약상 어음 신용등급 준수 요구
요구일자 및 이행일자	신탁업자 요구일자	2015년 8월 3일
	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¹⁾	2015년 8월 5일 현재 미이행
기타 사항 ²⁾		본건에 대해 하나UBS자산운용(주)의 이의신청 사실이 있으며,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위반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.

주 1) 이행한 경우 이행일자를, 이해하지 않은 경우 년 월 일 현재 미이행으로 기재

2)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

2015년 8월 11일

신탁업자 신한은행 투자자산수탁부장

담당자 : 과장 김두경 (☎2151-7813)

